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6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: 김영옥, 강석주, 유만희 의원(3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박강산, 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용균, 이종배, 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5명)

1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·고령화 추세로 향후 헌혈인구 감소 및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0~20대에 편중된 헌혈자 구조를 개선하여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를 통해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.
- 현행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내 헌혈을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사회적 분위기,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재직 공무원의 헌혈공가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임.
- 이에 현행 조례에 헌혈 공가 제도를 명시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헌혈 공가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고자 함.

- 또한, 상위법인 「혈액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조문 번호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헌혈 시 공가 활용 장려를 규정함. (안 제4조의2 신설)
- 나.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함. (안 제4조의2 신설)
- 다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(안 제1조 등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혈액관리법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의4”를 “제4조 및 제4조의6”로 하고,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”을 삭제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4조제1항”을 “제4조의3제1항”으로 하고, “제2조제2항”을 “제2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공기관 우선 참여)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소속 공무원 헌혈 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

제8조제1항 중 “제4조의4”를 “제4조의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회를 구성하고,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조 및 제4조의6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(생 략) 1. (생 략) 2. "헌혈권장활동"이란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. 3.~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 제4조의3제1항 ----- ----- 제2조의3제2항 ----- ----- 3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4조의2(공공기관 우선 참여)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1. 소속 공무원 헌혈 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</p>

<신 설>
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
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
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
인센티브 방안 마련

제8조(헌혈추진협의회 구성) ①

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4에 따라 시
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
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
여 지역사회의 시민·단체 또는 공
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
추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
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~⑤ (생략)

제8조(-----) ①

----- 제4조의6 -----

-----.

②~⑤ (현행과 같음)